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 >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06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 기관 의견	10

I. 개요

1.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0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26.
- (3) 회 부 일 : 2025. 9.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 중임.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하여 최대 8개월의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임. 상대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많은 사용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2025년 8월 법률 제21021호로 개정·공포되어 2026년 2월 15일 시행 예정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¹⁾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21021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E-8)’의 장기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음.²⁾

- 참고로, 종전에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취업(C-4)만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으로 허용되었으나,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신설한 대통령령 제3025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법무부령 제9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 20.	(생략)
20의2. 계절근로(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 30.	(생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일부 발췌)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계절근로(E-8)	8개월

2019년 12월 24일 공포·시행되면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음.

- 최근에는 2025년 7월 법률 제20992호로 개정·공포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 등을 법무부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제도가 2026년 1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며,³⁾

농어업경영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제10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3) 법률 제209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있는 권한(제10조의2)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제14조의2) 등이 규정된 법률 제21021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2월 15일 시행될 예정임.⁴⁾

4) 법률 제21021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5.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채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국민연금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①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거나(상호주의 원칙),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당연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 또는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및 기타(G-1) 등 8종의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당연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⁵⁾

5)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별표]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제53조 관련)

1. 문화 예술(D-1)	2. 유학(D-2)	3. 기술 연수(D-3)	4. 일반 연수(D-4)
5. 종교(D-6)	6. 방문 동거(F-1)	7. 동반(F-3)	8. 기타(G-1)

- 이에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에 관한 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경우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이 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① 본국의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 국적의 외국인,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외국인 및 ③ 산업연수활동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만 지급되므로,⁶⁾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당연적용

6)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대상자로서 최대 8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참고로, 2023년도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15,834명, 52.1%), 필리핀(8,733명, 28.8%), 라오스(2,330명, 7.7%), 캄보디아(2,183명, 7.2%), 몽골(682명, 2.2%), 기타(603명, 2.0%) 순인데,

이 중 베트남·라오스·몽골은 반환일시금제도에 관한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국가로서 해당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은 제한됨.

< 2023년도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외국인 국적별 현황 >

(단위: 명, %)

국가	합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기타(9개국)
인원	30,365	15,834	8,733	2,330	2,183	682	603
비중	100	52.1	28.8	7.7	7.2	2.2	2.0

자료: 법무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

구분	국가
사회보장협정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24개국
상응성 인정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등 25개국

자료: 국민연금공단

□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측면을 시정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그 사용자인 농어업경영체가 연금보험료 부담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1964년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제118호 ‘균등대우(사회보장) 협약[Equality of Treatment(Social Security) Convention]’에서 ‘이 협약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사회보장 부문의 적용범위 및 수급권에 대하여 그 영역 내에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다른 회원국 국민을 자국민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⁷⁾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요 송출국인 베트남·필리핀 등은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에 관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으로서 안 제126조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안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2026년 2월 15일)은 법률 제21021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계절근로(E-9)는 2019년 12월 14일 도입된 체류자격으로서 현재 시점에도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7) Article 3 1. Each Member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grant within its territory to the nationals of any other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equality of treatment under its legislation with its own nationals, both as regards coverage and as regards the right to benefits, in respect of every branch of social security for which it has accepted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당연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제법상 관습법·규범인 상호주의 원칙 및 내외국인 균등대우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요 송출국(베트남·필리핀 등)과 기존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법령에서는 영리활동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을 예외적으로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H-2) 등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과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6